

#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

## 1 제도 개요

-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재취업 지원(취업알선·전직훈련 등)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

\* 법해석 상 고용상의 대량변동은 대규모 이직(실직)을 의미

## 2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33조 (대량고용변동신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대량고용변동의 신고 기준 등), 제44조(과태료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2조(대량고용변동의 신고 등)

## 3 신고 기준

- 신고 대상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총 수의 10% 이상

□ 신고대상 산정의 예외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①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 단, 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제외

②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③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④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 4 신고 방법

□ 신고 방법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사업주는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신고 예외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제1항 후단

-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 신고를 한 경우 대량고용 변동 신고에 같음

\*fax: 0505-130-2062(고용노동부 청주시청 지역협력과)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3.2.>

**대량고용변동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신고내용	근로자 수	남	여
	총원	명	명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유		
	이직자 수	남	여
	총원	명	명
	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OO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명 이상,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직하는 근로자의 이직일 30일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